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가. 의안번호: 20-61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0년 5월 22일(금)

라. 회부일자: 2020년 5월 26일(화)

2. 제출사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개정사항 반영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각 개별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대상자 각 개별 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6조)

- 감면 대상자 각 개별 법령의 『등록 및 결정』 조항 인용

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개정내용 반영(안 제6조, 별표 1)

- 감면 대상자 규정(안 제6조제4항 신설)
-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정비(안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수수료 등 항목 신설

다. 관계법령 사항 반영(안 제1조, 별표 1)

- 목적(안 제1조, 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 근거 법령 정비)
-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항목 삭제(「사도법 시행규칙」 반영)

4.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139조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3) 「사도법」 및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 2020. 4. 16. ~ 5. 6.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5) 2020년 제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5.12.)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감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 근거가 되는 각 개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제1조를 살펴보면 동 조례의 목적이 정의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을 기존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서 '제137조, 제139조 및 개별 법령'으로 개정하고, 제6조(수수료의 감면 규정) 제1항제2호에 근거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였고,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는 기존 근거법령 인용문을 '따른'에서 '따라 등록 및 결정된'으로 개정하고, 제9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제7조'로 개정하는 등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고 개정함.

○ 이는 2019년 11월 19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42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즉, 기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등록 장애인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그 밖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 위 개정 조항에 상응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항목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조항은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수수료 없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자료: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9.] [행정안전부령 제142호, 2019. 11. 19., 일부개정]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 · 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2013. 12. 17.>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사도 [ ]개설 [ ]개축 [ ]증축 [ ]변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자우편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⑤ 사도의 설치 목적
	⑥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⑦ 사도의 전체길이 및 너비
	⑧ 착공예정 연월일
	⑨ 준공예정 연월일
	⑩ 공사 예산

「사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 개설(개축·증축·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획도면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1부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